

**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
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정(안)
제3조(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)영 제13조제5항에서 “그 밖에 중소기업청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”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.	제3조(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환경부장관,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(NET)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으로서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	1. (좌동)
2.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(공공부문) 및 민·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(공공부문) 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	2. (좌동)
3.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녹색기술을 실제 상용화한 녹색인증제품	3. (좌동)
4.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 조의 2에 따른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 정물품( <u>특허권자에 한함</u> )	4.----- ----- -----( <u>통상실시권자 제외</u> )
5. (신설)	5. <u>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융·복합기술개발사업 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</u>
6. (신설)	6. <u>산업융합촉진법 제3조 및 제24조, 시행령 30조에 따라 중소기업등의 산 업융합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</u>

<p>7. (신설)</p>	<p><u>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</u></p> <p><u>7. 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(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-33호)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'개발선정품'으로 지정된 제품(단, 해당 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에서 지정된 제품으로서 해당 수탁기관과의 계약 건에 한정하여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)</u></p>
<p>8. (신설)</p>	<p><u>8.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(공공부문)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(단, 해당기관의 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채택되어 수탁기관과의 구매계약 건에 한정하여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)</u></p>

현 행	개정(안)
<p>[별표 1] 성능인증 대상제품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3. <b>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</b>에 따라 신기술(NET)로 인증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9. (신설)</p> <p>20. (신설)</p> <p>21. (신설)</p> <p>22. (신설)</p>	<p>[별표 1] <u>성능인증 대상제품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3. <u>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,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,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신기술(NET)로 인증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9. <u>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융·복합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</u></p> <p>20. <u>산업융합촉진법 제3조 및 제24조, 시행령 30조에 따라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</u></p> <p>21. <u>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 8조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(기획재정부 고시 2010-33호)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‘개발선정품’으로 지정된 제품</u></p> <p>22. <u>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(공공부문)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</u></p>